

# 사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

## 1. 심사 경과

- 제 출 : 2007. 3. 30.(사천시장)
- 회 부 : 2007 3. 30.(총무위원회, 의안번호 제26호)
- 상 정 : 2007. 4. 16.(제113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의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총무과장 엄정기)

### 가. 제안이유

사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코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사천시 거주외국인에 대한 정의 및 지위(안 제2조 및 제3조)
  - 거주외국인에 대한 정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고, 사천시 관내에 90일이상 거주하며,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함.
  - 지위는 사천시 주민과 동일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음.
- 2) 사천시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(안 제6조)
  -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
  -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·체육행사 개최
- 3) 자문위원회 구성 등 (안 제7조 내지 제11조)
  - 사천시 외국인지원 시책 자문위원회 설치 : 10인 내외로 구성
- 4) 외국인 지원 활성화(안 제12조 내지 제16조)
  - 외국인지원 단체 지원
  - 사천시 세계인의 날 지정 : 매년 5월 21일
  - 외국인에 대한 표창 및 명예시민제도 운영

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최진기)

- 제정조례안은 우리 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거주하는

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고, 행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

- 주요내용으로는 거주외국인의 각종 행정혜택, 행정참여 등을 규정한 거주외국인의 지위와 거주외국인들을 위한 시책추진, 지원대상,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고, 관련사업 예산을 편성하도록 명문화하였으며, 자문위원회 설치와 외국인 지원단체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음.
-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제정하였으며,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: 제13조(업무위탁)제3항의 내용 중 업무를 위탁·운영하는 경우 지도·점검 강화를 위하여 정기점검을 년2회 이상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음.